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365

발의연월일: 2020. 11. 16.

발 의 자:민형배・이용빈・이정문

송갑석 · 양정숙 · 양경숙

김성주 · 신영대 · 이원택

박광온 • 도종환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사회가 고도화되고 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에 금융의 주체인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. 금융교육이 중요한 이슈입니다.

최근 제정된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은 금융위원회가 금 융교육과 학교교육·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금융교육의 시책을 수립·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에 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이 포 함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
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때, 금융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려 합니다. 이를 통해학생 때부터 올바른 금융지식 습득과 합리적 금융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입니다(안 제23조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초・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초·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학생의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금융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60조의3제1항 중 "제23조제2항·제3항"을 "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교육과정에 관한 적용례)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교육과정 등) ①・② (생	제23조(교육과정 등) ①・② (현
략)	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
	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
	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
	우 학생의 금융에 대한 이해를
	<u>높일 수 있도록 금융교육에 관</u>
	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③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제60조의3(대안학교) ① 학업을	제60조의3(대안학교) ①
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	
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	
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	
주의 교육, 인성 위주의 교육	
또는 개인의 소질・적성 개발	
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	
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	
당하는 학교(이하 "대안학교"라	
한다)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,	
<u>제23조제2항·제3항</u> , 제24조부	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
터 제26조까지, 제29조 및 제30	
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	
용하지 아니한다.	

②・③ (생 략)

②・③ (현행과 같음)